기 안 용 지

(전화 : 773 - 3762)

분류기호 문서번호	공원23200-75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 · 준영구. 10. 5. 3. 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90. 1.		
보조기관	환경녹지국장 허결	협조기관	문서통제
	공원과장		법열 1990. 1. 29 통제관
	공원관리계장		
기안책임자	(허도행)		발송인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발신명의	시 장
제 목	사직공원내 수영장 강제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		

(제1안)

수 신 : 내부결재

제 목 : 통 건

1. 공원23200-590 (89. 11. 18) 호와 관련임.

2. 위호와 관련 사직공원내 위탁관리 수영장 강제 철거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.

가. 사건번호및 사건명 : 89 다카028102 손해배상

나. 사건당사자 : 원고 : 최병옥 ~~30~~

1505-25(2-1) 일(1)갑 190mm×268mm 인쇄용지 2급 60g/㎡
85. 9. 9. 승인 "내가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" 가 40-41 1988. 6. 2.

032

~~91~~

수신 : 서울특별시

다. 소송결과 : 원고의 상고 허가 신청 기각.

라. 판결일 : 90. 1. 12.

마. 향후추진사항 : 소송비용 회수조치.

첨부 : 판결문사본 1부. 끝.

(제2안)

수 신 : 종로구청장

참 조 : 공원녹지과장

제 목 : 알 은 건

1. 공원 23200-590 (89. 11. 18)호와 관련임.

2. 위호와 관련 사직공원내 수영장 강제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 별첨 판결문과 같이 승소 확정되었으니 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.

첨부 : 판결문 사본 1부.

송 무 용 전

수 신 송 무 과장 1990. 1. 10.

사 건 명 손해배상(기)

사건번호 89다가28102 원고 (선정당사자) 최 형옥
피고 (피신청인) 서울시

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

적 기 사 항

1.	소방침 결정	년	월	일	까지
2.	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명의뢰	년	월	일	까지
3.	증 거 제 시	년	월	일	까지
4.	증 인 신 청	년	월	일	까지
5.	기 일	년	월	일	
			:	분	

첨부: 결정문 (原本) 사본 1부. 끝.

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법 무 담 당 관

034

~~32~~ 33

사직공원내 주영장절기

경녹지국장		1.23			
선 결	공원과장		결재(공람)	공원관리계장	
접수일시	1990 1. 2	번호 146		공원계장	
처리과	공원과			계	

035

대 법 원

제 3 부

결 정

사 건 89다카 28102 손해배상(기)

원고, 신청인 최 병 옥(崔 秉 玉)

서울 종로구 사직동 1의 48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, 경수근, 전재중, 최성곤

피고, 상대방 서 울 특 별 시

대표자 시장 고 건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.9.22.선고, 88나 47842 판결

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.

1990. 1. 12.

재판장 대 법 관 박 우 동

선 결				결재(공람)		
접수일시 3)	1990 1. 1 시 분	번호	10			
처리과						

~~33~~

대 법 관 이 재 성 _____

대 법 관 윤 영 철 _____

대 법 관 김 용 준 _____

정본입니다.

199 . . .

1990. 1. 15

대 법 원

법원사무관 정 병 재 ㊞

민소 151 ②

주 : 이 정본에는 법원의 인을 찍을 것

35137

038

서 약 서

정리번호

사건번호 : 89가합28102 사건명 : 손해배상(기)

원 고 : 최봉옥 피 고 : 서울특별시

소직은 위 사건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하나이다

1989 년 11 월 일

서 약 자

소 속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장 유 금 종

직 명 〃 공원관리계장 유 락 준

성 명 〃 지방행정주기원 김 양 수

서울특별시청 공원과 지방행정주기보 허 도 행

서울특별시장 귀하

(서명 날인하여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할것)